

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 제정

관련 규칙	시행 일정
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	2021년 7월 1일 이후 건조계약 되는 선박

○ 개정 사유

- 환경보호 관련 협약의 강화에 따라 선박에 설치되는 설비 및 장치에 관한 선급 규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제정함.

○ 개정 사항

- 선급 및 강선규칙 1편 부록 1-15(CLEAN 부호 부여를 위한 요건)과 “배기가스 배출 저감 장치에 관한 지침”을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으로 통합함.
- CLEAN2 부호에서 요구되는 증서 또는 적합확인서의 제출을 CLEAN1 부호에서 적용하도록 함.
- EEAS 부기부호가 설비 설치 목적에 따라 구분이 좀 더 명확하도록 CEmN과 CEmS로 개정함.

○ 영향 분석

- ✓ 안전, 보안 또는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 및/또는 기여
: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배출 저감장치에 관한 부기부호의 잘못된 적용을 줄여줄 수 있음. (CLEAN 부기부호 선박은 CEmN 부기부호와 CEmS 부기부호를 각각 가져야 함.)
- ✓ 순치수 또는 총치수에 미치는 영향
: 해당 사항 없음.